
안전보건교육교재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2024. 01.



K I S I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한국산업안전관리원

TEL: 1588-8393 (代) FAX: (031)414-0725

<h1 style="text-align: center;">안전보건교육일지</h1> <p style="text-align: center;">2024 년 01 월 일</p>		결 재	담 당	검 토		승 인
교육구분	1. 신규채용자 교육 2.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3. 특별안전보건 교육 4. 정기교육 5. 관리감독자 교육 6. 기타 ()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비 고	
	교육대상 근로자수					
교육구분	교 육 과 목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재준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교육목적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숙지 및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 육 내 용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사항 3.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 교육평가 및 의견						
강 사 명					비 고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23.09.27. 시행)

■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관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 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한다.

②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내용 정비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하고,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및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을 감면하며,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완화한다.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이 면제되고,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으로 완화한다. 또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는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나.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함께 제공해야 하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그간에는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국내’에서 ‘혼합’하는 방식으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사용을 허용하였다.

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의 사용범위를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는 ‘혼합’ 뿐 아니라 ‘물리적인 성형, 소분’ 등의 방식에도 허용되고,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해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에도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게 허용된다.

다. 석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 생략 신청 시 건축물대장만으로도 석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였다.

(1) 안전보건교육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기교육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관련)

가. 정기교육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나.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이 항에서 “비공개대상물질”이라 한다)을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제공받아 이를 원료로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이 항에서 “다른대상물질”이라 한다)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조하는 자 및 그 다른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료가 되는 비공개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비공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제조과정에서 화학적 조성(組成)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석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석면 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통지가 된 것으로 본

다.

1.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설계도서 사본, 건축자재의 목록·사진·성분분석표, 건축물 안팎의 사진 등의 서류. 이 경우 성분분석표는 건축자재 생산회사가 발급한 것으로 한다.
2. 건축물이 2017년 7월 1일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한 신축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
3.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는 경우: 공사계약서 사본(자체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사항(23.11.14. 시행)

□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7조(비상구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단서 신설>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제28조(계단참의 높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제28조(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계단참의 설치)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8조제1항제10호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작업지휘자의 지정 추가

3.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 주요내용

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개정('23.9.1. 발령, '23.12.2.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나.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및 「안전검사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및「안전검사 고시」개정('23.9.1. 발령, '24.3.2. 시행)으로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기존에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하는 한편,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 (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를 모두 설치토록 하였다.

이번에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 사용자는 개정고시 시행일('24.3.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신청기간 내 안전검사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불합격 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1)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형태 및 설치기준 개정내용

□ 개정 내용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7) 52(기계적 안전장치 등)

<종 전>

<과상승방지장치 설치의무>

- 옥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소작업대에는 건물의 천장 등과 작업대 사이에 작업자가 끼이거나 충돌하는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

<개 정>

<과상승방지장치 설치의무 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규정>

- 옥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소작업대에는 건물의 천장 등과 작업대 사이에 작업자가 끼이거나 충돌하는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
- 과상승방지장치는 다음과 같이 설치
 - 강재의 강도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쉽게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서 수평형(안전바 등)이나 수직형(방지봉 등) 등의 형태로 설치
 - (수평형) 상부 안전난간대에서 높이 5cm 이상에 설치하고 전 길이에서 압력이 감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수직형)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과상승이 감지되도록 상부 안전난간대 모서리 4개소에 60cm 이상 높이로 설치할 것. 단, 수직형과 수평형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직형은 2개 이상 설치

→

과상승방지장치 설치·사용

☞ 과상승방지장치는 수평형(안전바 등) 또는 수직형(방지봉 등) 등의 형태로 설치

구분	수평형(안전바 방식)	수직형(방지봉 방식)
설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부 안전난간대에서 - 전 길이에서 압력이 감지될 수 있는 구조 - 높이 5cm 이상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난간 상부에서 60cm 이상 높이로 설치  
설치 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바 - 안전난간 상부 4면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지봉 4개소 설치 - 수직, 수평형 동시 설치하는 경우 수직형 2개 이상 설치 

(2)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확대 및 안전기준 개정내용

□ 개정 내용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 제4호

<종 전>

<검사대상 산업용 리프트 범위>

-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다만,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산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개 정>

<검사 대상 산업용 리프트 범위 확대>

-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 1)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작업용 리프트, 0.09톤 이하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2)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리프트
 -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4)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

○ 「안전검사 고시」 [별표 3] 리프트의 검사기준 제29호

<종 전>

<낙하방지장치 설치 의무>

- 다음 각 목의 장치는 작동상태 및 조종이 양호하고, 이물질의 부착이 없을 것
 - 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3] 제36호가목4)에 따른 충격완화장치
 - 나. 로프 이완 감지장치(권상용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느슨해지거나 끊어지는 경우 동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다만, 랙 및 피니언식은 제외한다.)

<신 설>

<개 정>

<낙하방지장치 설치 대상 확대>

- 다음 각 목의 장치는 작동상태 및 조종이 양호하고, 이물질의 부착이 없을 것
 - 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3] 제36호가목4)에 따른 충격완화장치
 - 나. 로프 이완 감지장치(권상용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느슨해지거나 끊어지는 경우 동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다만, 랙 및 피니언식은 제외한다.)
 - 다. 낙하방지장치(운반구가 불의의 낙하 시 자동으로 운반구의 하강을 기계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3)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관련 안내 자료



최근 5년간('18~'22) 추락·끼임 사망자 35명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적재하중 0.5톤미만)

2024. 3. 2.~2024. 9. 2.까지
적재하중 0.5톤미만
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 받으세요!

☑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지금 사전컨설팅을 신청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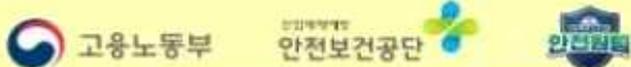


산업용리프트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승강기와 유사한 구조로서 철골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기초 바닥면에 고정 설치된 기계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	
사전컨설팅	안전검사
<p>📅 신청기간 2023. 9. 1. ~ 2024. 3. 1.</p>	<p>📅 최초검사기간 2024. 3. 2. ~ 9. 2.</p>
<p>📄 신청방법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소유주가 가까운 안전검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 http://miis.kosha.or.kr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대한산업안전협회 02-851-6452 <li style="width: 5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566-1277 <li style="width: 50%;">· 한국안전기술협회 1577-7514 <li style="width: 5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9 	
<p>📖 내용 안전검사기관이 유선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도 및 검사신청 방법과 검사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재정지원 신청 안내</p>	<p>🔍 주요검사항목 · 승강로, 운반구, 권상기 등 기계장치 · 낙하방지장치(3종),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p>
<p>🎁 혜택 안전검사 불합격 시 개선을 조건으로 행정처분(사용중지 등) 유예, 산업용 리프트 설비개선 또는 교체시 비용 70%지원 연계</p>	<p>🕒 검사주기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 마다</p>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장은 행정처분(과태료 1천만원 이하)을 받을 수 있으니 2024. 9. 2.까지 안전검사를 받고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끝 -